

대한내분비학회 신진연구자상 규정

2015.06.12. 제정

2015.11.27. 1 차 개정

2016.12.02. 2 차 개정

2018.12.14. 3 차 개정

2019.04.04 4 차 개정

제 1 조 (목적)

본 규정은 내분비학 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내분비학 발전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신진연구자와 과제에 대한 연구자상 수여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)

본 상의 명칭은 “대한내분비학회 신진연구자상”이라 한다.

제 3 조 (받는 사람 또는 과제)

본 상은 해마다 일반과제 1 명, 융합과제 1 명에게 수여한다. 수상자의 수는 추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될 수도 있다. 융합과제 부분은 신진 내분비 연구자의 공학-생명과학-의학을 융합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함이며, 연구개발 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조언과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의학분야 이외 (기초학, 공학 등)의 중견 연구자를 멘토로 반드시 제시한다.

제 4 조 (지급대상자의 자격)

본 상의 지급 대상자는 만 40 세 이하의 조교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직급을 가진 교원으로 신규임용 5 년 이내인 자에 한정하며 반드시 대한내분비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. (아닌 경우 연구상 접수 마감일 이전에 가입하여 자격이 완료되어야 한다). 연구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EnM 에 최근 3 년간 책임저자 (제 1 저자 또는 교신저자, 공동 제 1 저자와 공동 교신 저자도 인정)로 최소 1 편의 원저 또는 종설 논문 (증례 제외)을 게재하거나 게재 예정인 경우에 신청 자격이 가능하다..

한 연구자가 한 해에 두 가지 이상의 상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, 과거 본 학회에서 타 연구상 수혜자인 경우에는 수혜자의 의무를 완수한지 못한 경우 수상에서 제외된다.

제 5 조 (운영위원회)

대한내분비학회 연구위원회(이하 위원회)에서 본 상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을 담당하며 위원회에서 선정한 과제를 학회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최종 확정한다.

제 6 조 (추천 구비서류)

지원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고 정하는 날까지 위원회에 제출(우편 및 이메일)하여야 한다.

- (1) 신청서 1 통 (소정양식)
- (2) 이력서 1 통
- (3) 대학교 또는 병원의 재직증명서 (신규 임용일이 명시되어야 함)

(4) 사진(명함판) 1 매

(5) 연구자상 신청서 (소정양식) - 원본 1 부, 파일첨부(이메일 제출)

- I 형: 일반과제

- II 형: 융합과제 (의학분야 이외 멘토 제시)

※ 멘토의 역할: 의학분야 이외 (기초학, 공학 등)의 중견 연구자로 신진연구자 (멘티)가 미래 선도적 내분비 중개/융합 의과학자로서의 독자적 연구 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조언하고, 함께 공동 연구를 하거나, 타 연구자와의 연구교류확대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함.

(6) 연구업적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 (연구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 년간의 논문목록을 EnM 게재 논문, SCI/SCIE 게재 논문으로 분류하여 제출해야 한다. 또한, 연구책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논문의 별책 1 부를 동봉할 수 있다.)

제 7 조 (과제 심사)

본 상은 위원회에서 심사한다. 접수된 신청 과제를 심사 선정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다. 연구계획서 평가를 60%로 하고, 기존의 논문에 대한 평가를 30%로 하며 10%의 가산점을 부여한다. 가산점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부여한다. 연구상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, 대한내분비학회 (1) 임원 (정관 11 조), 부총무, 위원회 간사, 위원을 역임 (2) 최근 3 년간 대한내분비학회에서 강의 연자, 제 1 저자로 구연 및 포스터 발표자 (3) 최근 3 년간 EnM 에 원저 또는 종설 논문 편수 (제 1 저자, 교신저자의 경우에 한함), EnM 의 논문을 SCI 논문에 인용한 횟수, EnM 의 원저 또는 종설 논문 작성시 연구비 수혜를 사사한 횟수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. 가산점은 연구비 지원시 지원자가 제출한 자료에 한하여 검토하며 신청 시 누락된 자료는 검토하지 아니한다.

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자의 경우 상기 방법에 의해 심사한 총 평가 점수에 추가로 5%를 추가로 가산하여 평가한다.

제 8 조 (과제 결정)

선정된 수상자 및 과제는 대한내분비학회지에 공고한다.

제 9 조 (지급)

수상자 시상은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 석상에서 진행하며 지급 시점은 연구위원회에서 상의하여 결정한다. 연구비는 과제 당 1,000 만원으로 한다. 단, 연구비는 추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동될 수 있다.

제 10 조 (연구비 수혜자의 임무)

본 상 수상자는 (1) 수상 과제에 대하여 학회에서 요청시 수상 다음 년도 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하고, (2) 수상 일 기준으로 만 2 년 이내에 EnM 또는 SCI/SCIE/ESCI 저널에 주저자로 "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n Endocrine Society of New Faculty Research Award 20__ (수상연도)." 이 명기된 수상 과제의 논문을 발표하여야 하며, (3) 수상일 기준으로 만 2 년 이내에 EnM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타 논문들을 적어도 3 편 이상 본인이 주/공동 저자로 참여하는 타 SCI/SCIE/ESCI 논문 작성시 인용할 의무가 있다. 본 상의 수혜자는 추후 학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상에 지원시 지원서에 이 상의 수혜 여부와 수혜자의 임무를 다하였음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르거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 자격을 박탈한다.

부 칙

- (1)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나 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.
- (2) 본 규정은 2015년 6월 12일 대한내분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효된다.
- (3) 본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 대한내분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수정되었다.
- (4) 본 규정은 2016년 12월 2일 대한내분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2차 수정되었다.
- (5)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4일 대한내분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3차 수정되었다.
- (6) 본 규정은 2019년 4월 4일 대한내분비학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4차 수정되었다.